

제244회 임시회  
2005. 10. 25(화)

# 검 토 보 고 서

○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교육사회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 2005년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동 동의안은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업시행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 사업대상지역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3개 시군이며

- 추정 사업규모는

· 청주시 47km 457억 10백만원,

· 증평군 28km 237억 39백만원

· 진천군 33km 249억 79백만원으로

**총 108km에 사업비 944억 28백만원입니다.**

- 투자사업비 상환조건은 사업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민간투자자 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a이며

- 재원부담비율은

· 도청소재지 시군은 국비 50%, 지방비 50%

· 일반시군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입니다.

○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은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도에서 동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으로 처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 되어야할 시급성 및 필요성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청주, 증평, 진천 이외 타시군의 하수관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BTL사업이 3개 시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도 향후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BTL 사업의 목적이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조기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정책 목표에 있는바, 향후 경기 활성화로 동 사업이 중단될 시 하수관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셋째, 타도와의 도비부담 비율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도를 포함 6개 도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 BTL사업 우선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각 도의 사업비 부담비율이 우리도와 전라북도만 지방비의 50%을 도비로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바, 하수관거 BTL 사업비 지방비부담비율이 각 도별로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넷째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방안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BTL사업의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우리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계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다섯째 BTL 사업비에 대한 장래 재정확보 전망입니다.

금번 제출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는 2008년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하고 또한 연차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 추진시 추가된 사업비를 포함한 장래 재정확보 전망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